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9월 2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B+C)	기 정 예 산(B)			금회추경 (C)	증가율 (C/B)
		당초예산	1회추경	간주처리		
합 계	214,788,074	199,828,232	△507,004	9,106,740	6,360,106	3.05
일반회계	181,077,503	165,607,023	△507,004	8,697,240	7,280,244	4.19
특별회계	33,710,571	34,221,209	-	409,500	△920,138	△2.65
의료급여	27,628	32,763	-	-	△5,135	△15.7
주차장	33,682,943	34,188,446	-	409,500	△915,003	△2.64

※ 간주처리(총 12회 / 금회 8회)

(단위 : 천원)

구 분	계 (총 12회)	1 ~ 4회 (1차추경시)	5 ~ 12회 (금 회)				
			소 계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 금
합 계	9,106,740	3,426,708	5,680,032	2,528,854	△843,634	3,963,229	31,583
일반회계	8,697,240	3,390,708	5,306,532	2,528,854	△843,634	3,589,729	31,583
특별회계	409,500	36,000	373,500	-	-	373,500	-

II. 추정재원 — 6,360,10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순세제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 용 잔 액	재 산 세
합 계	6,360,106	18,467,342	1,788,134	△13,895,370
일반회계	7,280,244	19,698,465	1,477,149	△13,895,370
특별회계	△920,138	△1,231,123	310,985	-
의료급여	△5,135	-	△5,135	-
주차장	△915,003	△1,231,123	316,120	-

III. 세출예산

□ 위원회별 세출예산(일반회계)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합 계	181,077,503	173,797,259	7,280,244	100.0
운 영 위 원 회	2,154,928	2,133,778	21,150	1.2
시민행정위원회	156,209,292	150,161,107	6,048,185	86.3
재무건설위원회	22,713,283	21,502,374	1,210,909	12.5

□ 재원배분

○ 일반회계 — 7,280,244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 자 비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65	7,280,244	100	34	4,440,134	31	2,840,110
운 영 위 원 회	2	21,150	0.3	2	21,150	-	-
시민행정위원회	48	6,048,185	83.1	26	4,298,075	22	1,750,110
재무건설위원회	15	1,210,909	16.6	6	120,909	9	1,090,000

○ 특별회계 — △920,13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 자 비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9	△920,138	100	9	△923,138	-	-
의료급여특별회계	1	△5,135	0.6	1	△5,135	-	-
주차장특별회계	8	△915,003	99.4	8	△915,003	-	-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주요내용

<경상비> _____ 4,292,940천원

- 신규임용 공무원 및 기능직 전환자 인건비 2,504,026천원
- 상용직(공원녹지, 도로, 하수 등) 인건비 인상 180,000
-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477,149
- 종로 전국국악경연대회 30,000
- 종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10,000 등

<투자비> _____ 1,750,110천원

- 시설관리공단 총무팀 사무실 이전 190,951천원
- 교남동주민자치센터 수영장 운영위탁 119,143
- 재활용품 수집·운반(4개동) 민간위탁 지원 100,000
-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증가 562,500
(973,988 → 1,536,488)
-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생계비 지원 340,155
(5,412,006 → 5,752,161)
-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연구용역 60,000 등

IV.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규모

- 200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47억 8,807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63억 6,010만 6천원이 증가(3.05%)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810억 7,750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2억 8,024만 4천원이 증가(7.70%)한 반면, 특별회계는 337억 1,05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013만 8천원이 감소(△2.65%)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또 연초부터 12회에 걸쳐 총 91억 6,743만원의 간주처리가 있었는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86억 9,724만원, 특별회계가 4억 950만원입니다.

□ 추경재원

- 추경재원은 총 63억 6,010만 6천원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4억 6,734만 2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8,813만 4천원을 합한 금액에서 종합부동산세(국세) 신설등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감소액 138억 9,537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세출예산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62억 929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0억 4,818만 5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예산 1,810억 7,750만 3천원의 86.3%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113쪽)는 당초예산 편성시 일간지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25.2%를 절감편성(210,000 → 157,020 : △52,980천원)하였으나, 통·반장에게 매년 배부해오던 신문을 일시에 중단할 수 없어 통반장 현원(2,404명)의 85.5% 수준(2,057명)으로 일간지 또는 지역신문 중 1부씩을 배부한 결과, 지역신문의 경우 8월부터는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향후 구독이 불가한 상황으로서, 지역신문 활성화와 통·반장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정예산액	월 구독료		7월말현재 집행액	집행잔액
	부 수	금 액		
41,820	1,260	5,400	37,800	4,020

- 월 구독내역 : 종로신문 680부 / 종로저널 400부 / 시정신문 180부

- 신규자, 기능직 전환자의 인건비·직무수행비(113~114쪽, 121~122쪽) 및 연금부담금등(118쪽)은 2005년 2월 25일자 신규임용 공무원(40명)의 인건비와 직제개편으로 고용직에서 기능직10등급으로 전환된 직원의 보수 차액 등 총 25억 402만 6천원을 반영한 것이며,

상용직 인건비 인상분(117쪽)은 2005년 6월 27일 상용직노조와 구청장 협의회간에 체결된 2005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공원녹지·도로·하수분야 등 상용인부(72명)의 인건비 증액분 1억 8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모두 법정경비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115, 116, 117, 119, 120쪽)로 총 4억 3,756만 1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 청사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단본부(총무팀) 사무실을 구 송인2동사무소로 이전하기 위한 소요경비로서, 동사무소 리모델링 및 냉·난방기계장치 등 자본형성적 경비 1억 7,703만 6천원과 사무실 이전후의 각종 공과금 등 부대경비 1,391만 5천원 (115쪽)
- 구민회관 수도광열비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15,600천원) 및 구민회관내 용도폐기된 지하수 폐공처리비용(2,500천원) 등 1,810만원 (116쪽)
- 공단본부 이전에 따른 공간을 다용도 체조실로 변경, 사용에 따른 공사비 (35,500천원) 및 구민회관 인근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해소를 위한 옥탑쿨링타워 방음공사(25,500천원) 등 7,050만원 (117쪽)
-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셔틀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른 차량 추가임차 (35인승, 1대)에 따른 임차비 및 유류비 부족액 3,886만 7천원 (119쪽)

- 2005년 11월부터 교남동 주민자치센터 수영장 운영위탁에 따른 2개월간 인건비(11명 : 시설보조 3, 일용인부 2, 시간강사 5, 안전요원 1) 및 운영 경비 8,914만 3천원(119쪽)과 각종 비품구입 등 3,000만원(120쪽)입니다.
 - **청사 소방시설보수·소규모수리비(116쪽)**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노후 소방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소요예산과 재난 관리과·균형발전추진단 등 신설부서의 사무실 설치에 따른 보수비 등이며, **자산취득비(117쪽)**는 위 부서신설의 책상, 의자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서 기정예산에서 이미 집행한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 **문화학교 운영지원(120쪽)**은 짚풀생활사박물관에 대한 문화학교 지원사업(국비 50%, 구비 50%)으로서, 제1회 추경시 종전의 국고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국비 3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전년수준에 준하여 구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제8회 종로전국국악대회 및 제5회 종로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120쪽)**는 매년 개최해온 전국규모 대회로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 당초예산 편성시 삭감 되었으나,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악계 반발 등을 고려하여 시상금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규모로 개최하고자 소요경비를 반영(전년대비 60~67%)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로구의 대표적 국악행사로 발전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시상금 없는 대회가 원만히 개최될지 의문이므로 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122쪽)**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청운·효자·삼청·가회동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시 재활용품도 함께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재활용품은 봉투판매가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상당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한 반면 종전의 청소차량 운행경비 절감과 민간위탁에 따른 임여인력을 가로 청소 및 기동반에 투입함으로써 청소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 4개 동(10,000세대 기준)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연간 3억원(100천원×12/4개월)이면, 장래 종로구 전지역 확대시 주민등록 세대만 70,408세대(2004년말 현재)임을 감안하면 최소 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인바, 민간위탁비 산정에 있어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연구용역(123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내지 15조의6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의 복지수요 및 복지자원 등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005. 7. 29)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를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로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채 심사(124쪽)**는 동 복지관이 2005년 12월 19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수탁법인인 "우리모두복지재단"에 재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구성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및 결식아동 급식비(124쪽)**는 금년 7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면서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당초예산 편성시 보다 지원대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의 경우 연말까지 추가소요액(1,360,620천원) 중 구비부담분(25%) 3억 4,015만 5천원을 반영하였고 결식아동급식비는 현재까지의 실적행액을 감안, 연말까지의 추가소요액(65,640천원) 중 구비부담분 1,899만 4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126쪽)**는 지역시장 육성을 위해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대상시장으로 지정된 통인시장에 대한 실시설계 및 원가계산결과 당초 계상한 사업비(2,948,000천원)보다 2억 8,380만원(당초 대비 27%)이 추가소요됨에 따라 부족액 중 구비분담분(21%) 6,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향후 국·시비보조금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담주체별 추가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소요 예산액	당초 예산액	추 가 소 요 예 산 액				
		소 계	국비(60%)	시비(9%)	구비(21%)	민자(10%)
1,053,800	770,000	283,800	170,280	25,542	59,598	28,380

V.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 (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6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
- 2.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 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
-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설계금액 기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보조사업은 제외한다.